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 안 번 호	338
------------	-----

발의년월일 : '94.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운영에 대한 조례준칙시달 (내무부행정13104-297 '94. 2. 21)
- 당면한 지방행정의 국제화역량을 제고하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국제화추진 협의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 및 지방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함.

2. 주요골자

- 협의회의 기능은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의 설정,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도민의 국제화 의식제고 및 국제화 홍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기능을 수행함.
- 협의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회장을 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민·관·산·학의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6. 기타 : 참고사항 (내무부 행정13104-297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시공문사본)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회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주무 실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 및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